

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

☐ 대 상 : 소유자(공동명의자 포함)가 사망한 자동차

☐ 기 간

○ 상속개시일(사망일)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 등록

○ 자동차폐차 상속(말소등록)은

┌ 2024.6.18. 이전 사망자 : 상속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3개월 이내

└ 2024.6.18. 이후 사망자 : 상속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6개월 이내

※ 상속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기간 경과 시 범칙금(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)

-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,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, 최고 50만원까지

※ 자동차가 운행 중일 것으로 추측되거나 소재 불명 시 상속인이 운행정지명령 요청 가능

☐ 등록기관 : 전국 시청·군청·구(자치구) 어디서나 가능(자동차 등록부서)

☐ 구비서류(이전 등록 방문 신청) ★차 한 대당 서류 각 1부씩 필요★

구 분	구 비 서 류
사 망 자	- 사망자의 기본증명서(상세) 1부 -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오게 발급하여야 합니다. ※ 사망자의 사망신고 사실 및 전순위 상속권자가 모두 기록된 것 ※ 형제자매가 상속받을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추가 필요
상 속 자	-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- 자동차 보험가입 (상속자가 상속자동차의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) - 자동차등록원부 열람하여 자동차 압류 확인 (미납세금, 과태료 납부) - 자동차 저당(자동차등록원부의 "을"부) 열람 확인 - 자동차등록증 - 주행거리(계기판 확인)
상속협의자	- '인감증명서' 또는 '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) 사본' 각 1부 - 상속협의서(재산분할협의서) 1부(전순위 상속권자 개인별 도장 날인) ※ 도장은 이름이 모두 나와 있어야 합니다. ※ 상속전순위자 중 사망자는 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(상세)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및 배우자·자녀(조카)등의 상속협의 서류 등 추가 필요
미성년자 (공동상속)	-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(특정·친권·미성년후견 전부) 또는 (상세)1부 -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-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,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날인 된 동의서 1부
미성년자 (상속포기 등) *이해상반행위 해당되는 경우	-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(특정·친권·미성년후견 전부) 또는 (상세)1부 -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- 특별대리인 선임 판결문 -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, 특별대리인의 인감이 날인 된 동의서 1부

※ 대리인이 등록 시 : 상속인의 위임장(도장날인),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지참

※ 이전등록 신청서, 상속협의서(이전등록동의서)는 [전주시청 홈페이지 민원365](#) → [민원정보](#) → 민원서식에서 출력 가능

☐ 상속순위(민법 제1000조, 제1003조)

제1000조(상속의 순위), 제1003조(배우자의 상속순위)

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.

1.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+ 피상속인의 배우자
2.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+ 피상속인의 배우자
3. 피상속인의 형제자매
4.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

☐ 전화 : 천년전주콜센터 063-222-1000 / 전주시청 차량등록과(덕진구 완주로 6, 호성동) 063-250-8814